
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

□ 관련규정

경기아트센터 인사규정(일부 발췌)

제1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.<개정 2013.1.4>

8.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,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9. 아트센터로부터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12.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